

부천시행정법규상달실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93년 11월 24일
 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 다. 회부일자 : 93년 11월 24일
 라. 상정일자 : 93년 11월 26일 (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 김수한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
-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사무가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담실설치 : 시 정 과 → 기획담당관실
- 상 담 관 : 시정과장 → 기획담당관실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업무이관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?	• 종전 시정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개정안

의안번호	213
의 결	93. 12. 6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
-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사무가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상담실 설치 : 시 정 과 → 기획담당관실
- 상 담 관 : 시정과장 → 기획담당관

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설치)중 “시정과”를 “기획담당관실”로 한다.

제4조 제1항, 제6조 제1항, 제7조 중 “시정과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1조(생략)	제1조(현행과 같음)
제2조(설치) 상담실은 <u>시정과</u> 에 둔다.	제2조(설치) 상담실은 <u>기획담당관실</u> 에 둔다.
제3조(생략)	제3조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)① 상담실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<u>시정과장</u> 책임하에 운영한다.	제4조(운영)①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<u>기획담당관</u> 책임하에 운영한다.
② 상담대상은 민간인,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.	②
제5조(생략)	제5조(현행과 같음)
제6조(상담관)① 상담관은 <u>시정과장</u> 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.	제6조(상담관)① 상담관은 <u>기획담당관</u> 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.
②	②
③	③
제7조(임석)은 <u>시정과장</u> 은 필요한 경우	제7조(임석) <u>기획담당관</u> 은 필요한 경우
제8조내지 제14조(생략)	제8조내지 제14조(현행과 같음)